성주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**발 의 자 : 이창길** 의원외 2명

2. **제정이유**

○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
○ 새마을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○ **보조지원(안 제3조)**

■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**보험가입(안 제4조)**

■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

○ **예우(안 제5조)**

•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

4. **관련법령**

○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

5. 검토의견

□ **발의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**

□ 새마을운동이 시대변화와 함께 다시 한번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·봉사하고, 아울러 **「21C 선진화 새마을운동」**의 핵심 가치인 **“다정한 이웃”**, **“건강한 사회”**, **“살기좋은 고장”** 만들기에 온 군민이 다함께 동참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

□ 특히, 2008년도에 성주군 새마을지회가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도모 및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꾀하고,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**행·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**하기 위하여 **이창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**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□ **주요내용은**

○ 조례안의 구성은 **전문7조와 부칙**으로 되어 있으며,

○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**결론적으로**

○ **조례안의 구성과 체계, 내용 등이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